

직제규정

1998. 1. 1. 제정	1999. 8. 1. 개정	2003. 5. 23. 개정	2004. 10. 8. 개정
2005. 12. 9. 개정	2007. 4. 17. 개정	2007. 9. 28. 개정	2008. 4. 23. 개정
2009. 7. 14. 개정	2009. 12. 16. 개정	2010. 8. 25. 개정	2010. 12. 10. 개정
2012. 8. 17. 개정	2012. 9. 4. 개정	2012. 12. 14. 개정	2013. 12. 13. 개정
2015. 2. 24. 개정	2015. 8. 17. 개정	2016. 7. 1. 개정	2016. 11. 18. 개정
2018. 4. 1. 개정	2019. 1. 21. 개정	2019. 7. 24. 개정	2019. 9. 26. 개정
2020. 7. 28. 개정	2020. 11. 18. 개정	2020. 12. 31. 개정	2021. 5. 7. 개정
2022. 9. 1. 개정	2023. 1. 1. 개정	2023. 3. 21. 개정	2024. 2. 8. 개정
2025. 2. 19.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정관」 제20조에 따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조직과 업무분장,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19.>

제2조(구성원) ①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대표하고 안전원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2. 19.>

② 감사는 안전원의 재산, 회계 및 업무에 관한 감사를 관장한다. <개정 2025. 2. 19.>

③ 안전원의 직원은 관리직 직원 및 계약직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 2. 19.>

④ 관리직 직원은 1급부터 7급까지로 구분한다. <개정 2025. 2. 19.>

⑤ 계약직원은 직급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문계약직·일반계약직·무기계약직·위탁사업계약직·인턴 등으로 구분하며, 그 밖에 계약직원의 정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2. 19.>

제3조(정원) ① 임원 및 관리직 직원의 정원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다만, 「인사규정」 제46조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정원은 별표 3의 관리직 직원의 정원과 별도로 관리하고, 계약직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2. 19.>

② 삭제 <2025. 2. 19.>

③ 관리직 직원이 「인사규정」 제35조에 따라 근속승진할 때 해당 승진직급의 정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승진직급의 정원이 증가하고 승진 전 직급의 정원은 감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5. 2. 19.>

제4조(조직) ① 이사장 밑에 경영관리본부, 사업관리본부를 두고, 감사 밑에 감사실을

두며, 세부적인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2. 19.>

② 경영관리본부 밑에 기획조정실, 운영지원처, 안전문화처, 통합정보처를 두고, 사업관리본부 밑에 공제사업처, 안전관리처, 교육시설지원처, 권역별 지부를 둔다. <개정 2025. 2. 19.>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권역별 지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 사무소를 두고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2. 19.>

④ 이사장은 체계적인 조직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서 밑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하부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2. 1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부 및 각 부서의 장은 4급 이상 관리직 직원 또는 계약직원 중 전문계약직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 2. 19.>

⑥ 본부 및 각 부서의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2. 19.>

⑦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게는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사장은 직위·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9.>

제4조의2(임시조직) ① 이사장은 한시적인 특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9.>

② 임시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2. 19.>

제5조 삭제 <2025. 2. 19.>

제6조(권역별 지부)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권역별 지부의 권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25. 2. 19.>

1. 서울·강원권(서울, 강원)
2. 경기·인천권(경기, 인천)
3. 대전·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4. 대구·경북권(대구, 경북)
5. 부산·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6. 호남·제주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② 삭제 <2025. 2. 19.>

제7조 삭제 <2025. 2. 19.>

제8조(직무대리) ① 이사장은 임직원에게 전보, 퇴직,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상 공백이

발생할 경우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9.>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대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2. 19.>

부칙 (1997. 12.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종전의“직원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9. 7.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부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서울.인천.제주지부는 본부와 통합 운영하며, 인천지부(2000년 6월 퇴직예정) 및 경남지부(2000년 12월) 직원은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기간까지 현 지부에서 근무할 수 있다.

부칙 (2003. 5. 23.)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0. 8.)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9.)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국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사무국장 임용시까지 현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부칙 (2007.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국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4조제2항과 관련하여 임기제 사

무국장 임명시 최초로 임명하는 사무국장의 임기는 필요한 경우 회장이 따로 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

부칙 (2008. 4. 23.)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14.)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16.)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25.)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제6조, 별표 1 및 별표 2 중 사무총장 및 사무국에 관한 규정은 이 규정 개정 당시 재임 중인 사무총장 임기(2012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0. 12. 10.)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17.)

(시행일) 이 규정은 정관이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9. 4.)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14.)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13.)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24.)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정관이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팀(지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부서(지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기획조정팀장의 소관사무	기획총무부장
총무팀장의 소관사무	
재무회계팀장의 소관사무	재무관리부장
교육홍보팀장의 소관사무	안전관리부장
공제보상팀장의 소관사무	공제사업부장
예방사업팀장의 소관사무	안전관리부장
자산운영팀장의 소관사무	재무관리부장
회원관리팀장의 소관사무	공제사업부장
영남제주권지부장의 소관사무 중 이 규정 제6조에 규정된 호남·제주권 지역에 관한 사무	호남·제주권지부장
호남충청권지부장의 소관사무 중 이 규정 제6조에 규정된 충청권 지역에 관한 사무	충청권지부장
감사팀장의 소관사무	감사실장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팀(지부) 소속 직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부서(지부) 소속 직원으로 본다.

기획조정팀, 총무팀	기획총무부
자산운영팀, 재무회계팀	재무관리부
공제보상팀, 회원관리팀	공제사업부
예방사업팀, 교육홍보팀	안전관리부
호남충청권지부	호남·제주권지부
영남제주권지부	영남권지부
감사팀	감사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단서 중 “감사팀”을 “감사실”로 한다.

② 예산성과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총무부장”을 “기획총무부장”으로 한다.

③ 재무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제33조제2항 중 “재무회계팀장”을 “재무관리부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총무팀장”을 “기획총무부장”으로 한다.

제4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부서 또는 그 소속 직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부서 또는 그 소속 직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 6. 24.)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18.)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 20.)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예산성과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총무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재무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제33조제2항의 내용 중 “재무관리부장”을 “경영지원본부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기획총무부장”을 “경영지원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2019. 7.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위규칙의 개정) 계약직원 인사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계약직원의 자격요건 및 정원 중 “12명”을 “10명”으로 한다.

부칙 (2019. 9. 2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회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2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회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18.)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12.)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17.)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2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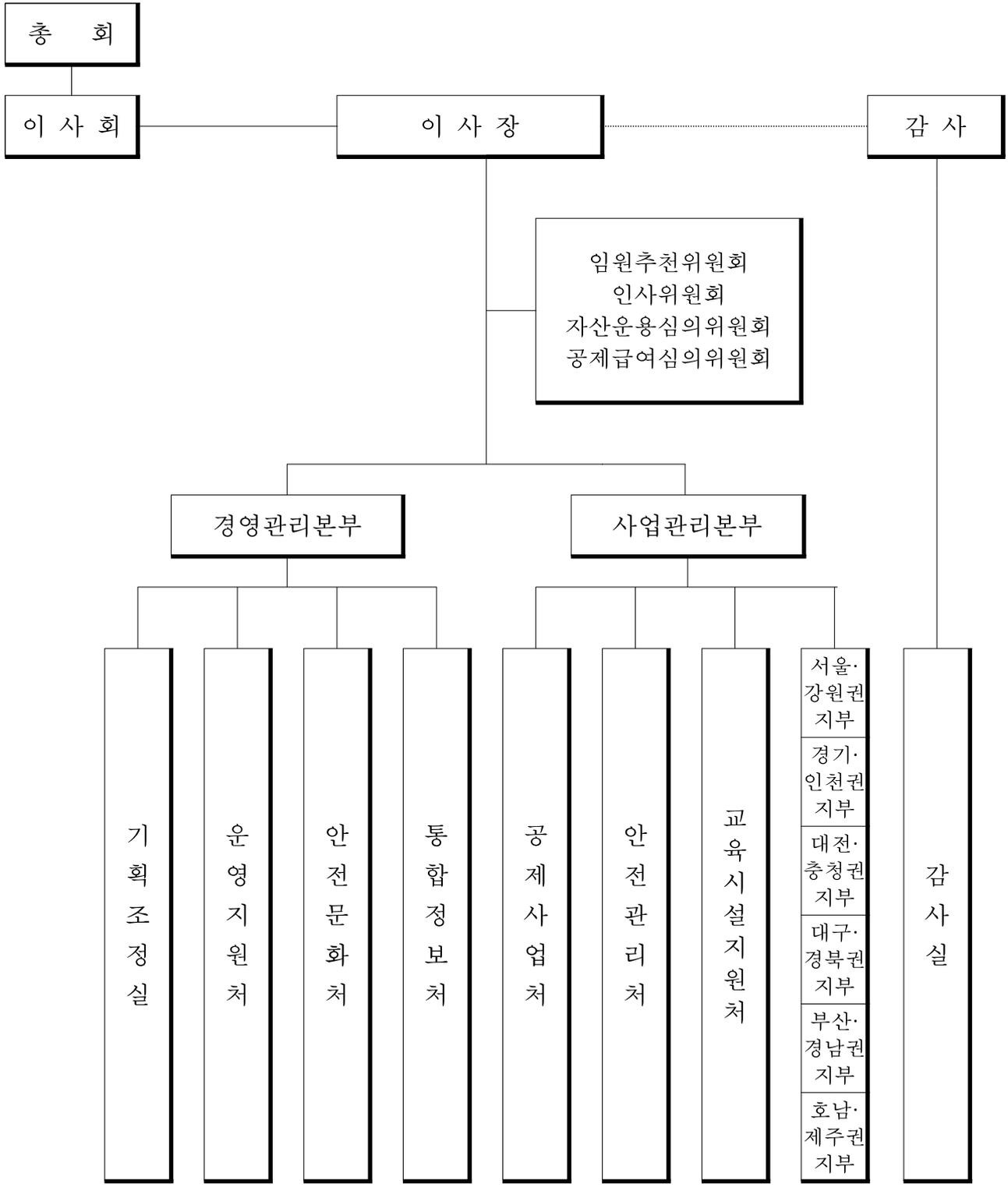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2. 1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5. 2. 19.>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조직도



[별표 2] <개정 2025. 2. 19.>

임 원

구 분	이사장	비상임이사		감사	계
		당연직	임명직		
정 원	1	7	3	1	12

[별표 3]

직 원

구 분	관리직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정 원	3	5	10	30	43	46	7	144

- 1) 총정원내에서 1-4급 직원의 잔여 T/O를 하급직원의 증원으로서는 활용가능
- 2) 5급~7급 정원은 해당 직급 정원합계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유동적으로 변경하여 활용 가능